

의안번호	제 227 호
의 결 연 월 일	2023년 3월 일 (제407회)

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
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임영은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3월 7일

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임영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3월 7일

발 의 자 : 임영은, 노금식, 최정훈,
김성대, 오영탁, 이옥규,
이태훈

1. 개정이유

-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- 자치경찰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의 설치 및 활동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 - 협의체 구성 :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
 - 협의체 운영 :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부터 위원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

- 위원회에 위원이 성별·경력별로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
- 자문기구 설치 근거 신설(안 제15조)
 - 자치경찰의 정책·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
-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(안 제17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라. 입법예고 : 2023년 2월 24일 ~ 3월 1일(5일간)

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
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영 제4조의 3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장이 된다.

③ 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,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.

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부터 위원 구성이 완료 되는 날까지 운영할 수 있다.

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

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·경력별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⑦ 도지사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협의체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

지 않는다.
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5조부터 제17조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자문기구 설치 등) ① 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정책·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자치경찰정책·제도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제안, 의견수렴 및 활동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.

제17조(종전의 제16조)의 제목 “(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)”을 “(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다만, 제1항”을 “제1항과 제2항”으로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4조의2(위원회 위원구성협의 체의 구성 및 운영)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(이하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<u>②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장이 된다.</u></p> <p><u>③ 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,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.</u></p> <p><u>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부터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</u></p> <p><u>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·경력별로 위원이 균형있게</u>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236 1151 416 1193"><신설></p>	<p data-bbox="858 282 1358 324"><u>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20 353 1417 831">⑦ <u>도지사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협의체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</u></p> <p data-bbox="820 860 1417 1113">⑧ <u>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20 1151 1417 1473">제15조(자문기구의 설치 등) ① <u>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정책·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820 1503 1417 1756">② <u>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자치경찰정책·제도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20 1785 1417 1962">③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 제안, 의견수렴 및 활동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제15조</u> (생략)</p> <p><u>제16조(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)</u> ①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② 다만,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도 「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과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.</p> <p><u>제17조</u> (생략)</p>	<p><u>원회가 정한다.</u></p> <p><u>제16조</u> (현행 제15조와 같음)</p> <p><u>제17조(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)</u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도 「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과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.</u></p> <p><u>제18조</u> (현행 제17조와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1. 7. 1] [법률 제17990호, 2021. 3. 30, 일부개정]

제26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조례로 정한다.

제35조(예산)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·도지사가 수립한다. 이 경우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
□ 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

제4조의3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) ①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

협의체를 둘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회구성협의체, 자문기구 참여 실비 지급
-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지원 사업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위원회구성협의체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
-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자문기구 참석수당 지급
-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 복지 지원

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 제4조의2제7항, 제15조, 제17조제2항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위원구성협의체 5명 × 년 2회 × 100천원(참석수당) × 2년(3년임기 위원선발)
- 자문기구 10명 × 년 4회 × 100천원(참석수당) × 5년
- 충청북도 일반직과 경찰관 복지포인트 기본포인트 차액 지원 (道 일반직 90만원 -경찰관 40만원)

구 분	합 계	산출기초	비고
후생복지비 지원 (복지포인트)	10,500천원	- 공무원이 아닌 직원(공무직) 21명×500천원	

나. 추계 결과('23년부터 향후 5년간) : 74,500천원

- 위원구성협의회 참석수당 : 2,000천원
- 자문기구 참석수당 등 실비 지급 : 20,000천원
- 후생복지비 지원 52,500천원

다. 재원 조달방안 : 도비(자체재원)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 합 계	14,500	15,500	14,500	14,500	15,500	74,500
후 생 복 지 제 도 운 영 (공무원이 아닌 직원)	10,500	10,500	10,500	10,500	10,500	52,500
위원구성협의체 참석수당	-	1,000	-	-	1,000	2,000
자문위원회 참석수당	4,000	4,000	4,000	4,000	4,000	20,000